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재외국민) 요강

구 분	수시모집
정원외	· 재외국민

목 차

I.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변경사항)	1
II.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2
III. 전형별 모집인원	3
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4
V. 세부 전형별 안내	7
VI. 지원자 유의사항	13
VII.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8
VIII. 전형료	19

I.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사항)

■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해외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 졸업(예정) 자
 - ③ 외국의 학교(고교과정 1년 포함)에서 연속 3년 이상 이수한 자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2년 2월 28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지원유형별 안내페이지에서 참조

■ 전형요소

전 형		모집인원	전 형 요 소	수능최저 학력기준
정원외	재외국민	12명	면접 100%	-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전형별 주요변경사항

전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재외국민	① 변경사항 없음	-

II.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모집단위		모집정원(정 원내)
기계공학과		125
기계설계공학과		85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메카트로닉스전공	80
	AI로봇전공	40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05
	임베디드시스템전공	70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85
	소프트웨어전공	80
게임공학과		120
신소재공학과		85
생명화학공학과		85
나노반도체공학과		90
에너지·전기공학과		90
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71
	IT경영전공	68
디자인공학부	산업디자인공학전공	66
	미디어디자인공학전공	33
산업융합학과(야간)		2
총 계		1,380

Ⅲ. 전형별 모집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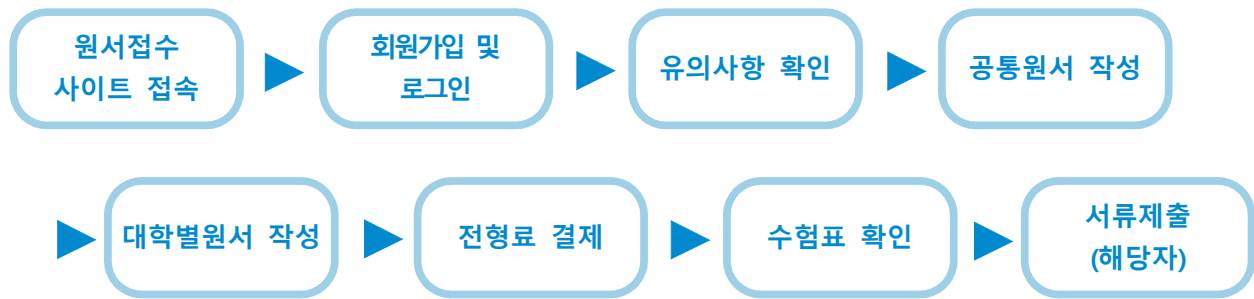
모집단위		정원외
		모집인원
기계공학과 ★		12
기계설계공학과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메카트로닉스전공 ★	
	AI로봇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	
	임베디드시스템전공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소프트웨어전공	
게임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생명화학공학과 ★		
나노반도체공학과 ★		
에너지·전기공학과		
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IT경영전공	
디자인공학부	산업디자인공학전공	
	미디어디자인공학전공	
총계		12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재외국민전형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12년 이상 외국에서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 제한이 없으나 교육여건이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점 성적순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적정인원을 선발함.
- (★) 표시된 학과(또는 전공)는 공학교육인증 기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필수

IV. 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재외 국민	원서접수	2021. 7. 5.(월) 10:00 ~ 7.(수) 18:00까지	• http://www.uwayapply.com	• 100% 인터넷 접수
	서류제출	• 등기우편 : 2021. 7. 9.(금) 소인까지 접수 • 방문제출 : 2021. 7. 9.(금) 17:00까지 접수	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입학관리팀	• 해당자에 한함 • 우편제출 시 도착여부를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면접고사	2021. 7. 27.(화) 10:00	• 본교 내 지정장소	• 고사시간 및 장소는 고사일 3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 • 수험표, 신분증
	합격자 발표	2021. 7. 30.(금) 11:00	• 본교 홈페이지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21. 12. 17.(금) ~ 20.(월) 16:00까지	• 기업은행	
	충원합격자 발표	2021. 12. 27.(월) 21:00까지	• 본교 홈페이지	
	충원합격자 예치금 납부	2021. 12. 28.(화) 16:00까지	• 기업은행	
	본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 11.(금) 16:00까지	• 기업은행	

1. 인터넷 원서접수 이용 절차



2.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접수가 완료된 경우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 및 지원자의 과오로 인한 전형료환불은 불가능하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형 및 지원 학과·전공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취소 처리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다. 복수지원 허용범위
 - 우리대학 수시모집에서는 6개 전형 이내에서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단, 고사일이 중복되는 전형은 복수지원 불가)
- 라.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여야 하고 전화번호는 전형 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3X4cm)을 스캔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모집요강에 명시된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고, 요강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지원자의 과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 문의사항(해당업체의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할 것)

- 유웨이어플라이 : 1588-8988

4. 합격자발표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

- 가. 합격자 명단과 예비후보자의 명단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표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확인예치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등록포기자로 확정하고, 예비순위자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라.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마. **전화로 개별 통보하는 충원합격 발표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까지 시도하여 연락되지 않는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합격을 통보함.** 이에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에 유의.**
- 바. 예비순위자로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교 입학관리팀(1588-2036)으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 예비순위자는 면접응시자(결시자 제외) 중 최초합격자와 면접성적이 60점 미만인자를 제외한 모든 수험생을 성적순에 의거 예비번호를 부여합니다.

5.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안내

- 가. 장애인으로 본교 전형의 고사(논술고사, 면접고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원서접수시 장애인 편의제공대상자 여부에 필히 확인을 하여 대상자 파악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나. 일반수험생들과 고사에 응시하기 힘든 경우 아래의 편의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 특별고사실에서 고사 응시
 - 확대 독서기 비치, 별도의 좌석 배치
 - 장애학생도우미 대기 등

V. 세부 전형별 안내

1. 모집단위

모집단위		모집인원
기계공학과		12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메카트로닉스전공	
	AI로봇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임베디드시스템전공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게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나노반도체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IT경영전공	
디자인공학부	산업디자인공학전공	
	미디어디자인공학전공	
총 계		12

2. 지원자격

가. 중·고교과정 해외학교 이수자

1) 공통학력 기준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 졸업(예정) 자
 - ③ 외국의 학교(고교과정 1년 포함)에서 연속 3년 이상 이수한 자

2)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자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 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 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 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 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해외 재학, 근무, 체류 조건

학생		해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학생 해외재학 기간의 3/4 이상 (매기간)	3년 이상 (1,095일)	학생 해외재학기간의 2/3 이상 (매기간)	

■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이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제3국 수학 인정서를 제출해야 함)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함.

■ 상사직원·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형식은 상근직인 경우로 국한함 (유학·교육·연수·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함).

■ 본교는 고교졸업학년도 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의 입학허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

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1) 학력기준

-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였을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 한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제9호).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2) 보호자 등의 조건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1		보호자2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확인		-	-	-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비 고
	서류심사	면접	계	
전 학과	적/부	100%	100%	

가. 면접은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실시

나. 면접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실시

다. 면접항목 : 의사소통능력, 학문적성, 공동체의식, 기본예절, 기초지식 등 5개 항목

라. 면접평가 : 5개 항목을 종합하여 A, B, C, D, E, F로 평가하며, 성적 총점이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

4. 선발원칙

가.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의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외국민 전형 입학자격을 박탈

다. 본교에서 기대하는 수학능력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자 및 지원자격에 미달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라. 합격 후 지원 서류 조회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

마.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전형일정

- 면접고사일 : 2021년 7월 27일(화)
- 고사시간 및 장소는 고사일 3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고

6.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중·고교과정 해외학교 이수자	① 입학원서 ② 서류목록표 (서식1) ③ 학력 및 지원자격 기록표 (서식2) ④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⑥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⑦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⑧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⑩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⑪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⑫ 재외교육기관확인서(학력인정확인서(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⑬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해외 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⑭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⑮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⑯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⑭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자영업자) ⑮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① 입학원서 ② 서류목록표 (서식1) ③ 학력 및 지원자격 기록표 (서식2) ④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⑥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⑦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⑨ 신분증 사본 ⑩ 재외교육기관확인서(학력인정확인서(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① 입학원서 ② 서류목록표 (서식1) ③ 학력 및 지원자격 기록표 (서식2) ④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⑥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서류)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불필요

- 가. 외국학교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나.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외국에서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 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다. 지정된 제출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 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함.
- 라. 최종합격 최종등록 후 지원자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마. 해외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등록 후 졸업증명서와 최종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입학개시 이전까지 제출해야 함.
- 바. 국내학교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사.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아.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함.
- 자. 본교에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VI.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가.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됩니다.
 - 전형이라 함은 정원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1개의 대학에 복수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복수지원 허용범위

- 우리대학 수시모집에서는 6개 전형 이내에서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단, 고사일이 중복되는 전형은 복수지원 불가)

다.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자는 합격사실이 취소가 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라. 수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으로 등록한 수험생이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입학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가 정해진 본 등록기간에 미등록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가 전산자료 검색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 이후라도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2. 기타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가 완료된 경우 지원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으므로 전형명과 모집단위, 전형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 대학 전형 일정 중복의 사유로 지원철회 및 변경은 불가하오니 필히 지원하는 각 대학의 전형일정을 충분히 확인 하시고 지원바랍니다.
- 나. 입학 전형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지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구비서류가 미비 되어 전형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도착여부는 개별 연락하지 않으므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제출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전형기간 중 공지사항과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자 등의 자격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입학 후에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과 입학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입시요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우리대학 입학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 사.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확인 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대입 공통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처리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모집단위(지망학과)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입학, 장학, 학사, 통계 업무 및 신입생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1~4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자기소개서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일부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감염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37조

※ 처리정지 요구 권리 거절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2항2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 및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 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1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이름,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수험번호,대학코드,합격/예치금구분,접수장소,접수일자,지원결과,전형유형,모집단위명,계열코드,출신고교코드,출신고교유형코드,출업연도,등록일자구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모집시기,수험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모집단위명,접수시간,접수장소,합격여부,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대학코드,수험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고교코드,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 관련 대입원서접수정보 연계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 모집단위(지망학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주 이름, 계좌번호,자기소개서(고교 학업 노력 및 경험 내역, 고교 교내 활동 내역, 고교 배려나눔 협력활동 내역, 대학별 자율문항)		※ 즉시 연계 수행함으로 개인정보 보유하지 않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ID,접속정보,개인민감정보 복호화 내역, 접속IP주소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원서 일치성 검사	대학명,수험번호,이름,모집단위,전형유형,접수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대학원서접수대장의 원서일치성 검사 서비스를 위한 필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시험 대리응시자확인을 위한 수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 검정고시, 기타 수능응시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까지	
(주)유웨이어플라이	대입원서접수대행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대학 유의사항 : 대학에서는 계약된 원서접수 대행사만 수탁업체로 명시하고 대행사와 협의한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을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필수)]

• 합격자에 대해서 제출 서류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합격 또는 입학의 취소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제출서류 발급기관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출서류 진위여부 조회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모집단위명, 제출서류 내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제출서류 진위여부 조회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필수)>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가?

☐ 확인함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필수)>

- 대입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가?

☐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필수)>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가?

☐ 확인함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필수)>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대입원서를 6번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③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재외국민 전형(모집정원의 2% 정원의 선발), 본인만 외국인,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 ④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가?

☐ 확인함

VII.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 등록포기

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하고, 예비순위자 순위에 따라 총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나. 수시모집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포기 및 등록(확인예치)금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기간 : 2021. 12. 27(월) 16:00까지

② 신청방법 :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http://iphak.kpu.ac.kr>)에 접속 → 등록금환불신청 배너 클릭 → 로그인정보 입력 → 환불사유 입력 및 인증(핸드폰인증, 계좌인증) → 환불신청

라. 입학일 이후 자퇴자는 본교 학칙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VIII. 전형료

모집시기	전형명	전형료
수시모집	재외국민	100,000원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포함, 원서접수 수수료는 환불대상이 아님.

-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고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음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하여 사유를 입증해야 환불이 가능함(수수료 제외). 부득이한 사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 의거 아래와 같음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상기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응시일 5일 이내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신청은 불가
- ▶ 타 대학 입학전형과의 일정 중복으로 인한 고사 결시 또는 지각, 입시일시 착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고사 미응시자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전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수수료 제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형료 환불 혜택이 없음). 단,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전형료 반환은 2022년 4월 30일 이전 우리대학이 공지한 기간에 실시함.
 - 입학전형료 반환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희망할 경우 본교 방문 환불도 가능함.
 - 반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직접방문 창구 운영 및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소요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서식1〉

서류 목록표

수험 번호	
지원 학과	
성 명	
지원자격 구분	

[illegible]

학력 및 지원자격 기록표

수험번호	
지원학과	
성명	
지원자격 구분	

1.초.중.고 수학기간 기록 (초등학교부터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학교소재지		수 학 기 간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 간	재학년수	학년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지 원 자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일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일																								
	출입국 내역		최초출국일(년 월 일), 최종귀국일(년 월 일)																								

※ 수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2. 특이사항 (지원자의 월반,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3. 부모 외국체류 현황 (학생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재학기간 내에서 작성)

[illegible]

4. 부모 국외 근무기간 정보

구 분	소재지		국외 근무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 간						총 근무기간
보호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총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배우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총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은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111

지원자

(인 또는 서명)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빨간색 박스 부분을 자필로 작성한 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	-----------------------------

용도(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인 Applicant Name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